

의안번호	2205037
의 퇴 인	김준혁 의원
회 답 일	2025. 3. 26.
추 계 번호	24A46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담배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89.7억원(연평균 37.9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3,643	3,716	3,791	3,866	3,944	18,961	3,792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결과보고 비용	2.3	2.4	2.4	2.5	2.5	12.2	2.4
합 계	3,645.3	3,718.4	3,793.4	3,868.5	3,946.5	18,973.2	3,79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7 (담배의 효과적 관리와 국회 보고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의무 규정
2	안 제25조의8 (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검사기관 지정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의무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5조의 10 (불법 전자담배 등의 범정부적인 실태조사, 탈세조사 및 단속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탈세조사, 실태조사 및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재량 규정
4	안 제27조(벌칙)	○ 관련 벌칙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한다.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5조의7 (담배의 효과적 관리와 국회 보고 등)	○	—
2	안 제25조의8 (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검사기관 지정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세출사업(1131-300) 등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 분석 및 공개 등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재정소요 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3	안 제25조의 10 (불법 전자담배 등의 범정부적인 실태조사, 탈세조사 및 단속 등)	×	○ 범정부 실태조사 등은 추가재정소요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탈세조사 및 단속 등을 통한 벌금 부과시 재정수입(세외수입) 증가에 해당
4	안 제27조(벌칙)	×	○ 벌금 상향은 재정수입(세외수입) 증가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중 기획재정부장관 주도로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국회에 보고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에 따라 실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비용추계 규모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소요비용을 추계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231-509)’ 사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¹⁾ 등에 근거하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보고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 기준 35.7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됨
 - 개정안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²⁾의 1종당 제작인쇄비용 수준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소요비용을 추계
 - － (1종당 인쇄비용) 국가결산보고서 136종에 대한 2024년 인쇄비 예산은 총 313,155,500원으로 결산보고서 1종당 인쇄비는 2,302,614원임
- 개정안 중 담배 유해성 비교평가 및 식별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 불법 전자담배 등의 범정부 실태조사의 경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 근거하여 이미 다수의 세출사업이 실시 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함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골자로 하는 “담배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등이 추진 중이며, 2025년 예산안 기준 35.2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됨

1)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 15종의 부속서류는 총 136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4, p.388.)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개정안에 따른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소요비용은 유사사례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최근 5년 평균 사업비(39.3억원)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4.11.)³⁾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내역: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안	연평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20	2,584	3,539	6,947	3,572 ¹⁾	3,932

주: 2021~2024년은 집행액, 2025년은 예산액 기준임

주: 1) 2025년 예산안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고도화를 위한 2차년도 정보화 예산이 전년 대비 81.2% 삭감되어 편성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231-509)’ 사업의 최근 5년 예·결산 내역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90억원(연평균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024~2031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 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11.

[표 3]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3,643	3,716	3,791	3,866	3,944	18,961	3,792

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11.)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연간 국회 보고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담배의 효과적인 관리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2백만원(연평균 2.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서 규정한 담배사업법령 위반 실태, 담배의 수입 및 세수 실적, 불법 전자담배의 탈세 및 단속 결과, 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등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인쇄비용은 2,302,614원이 추계기간 동안 매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

[표 4]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결과 보고를 위한 인쇄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결과보고 비용	2.3	2.4	2.4	2.5	2.5	12.2	2.4

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11.)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6.5억원, 2030년 39.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189.7억원(연평균 37.9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3,643	3,716	3,791	3,866	3,944	18,961	3,792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결과보고 비용	2.3	2.4	2.4	2.5	2.5	12.2	2.4
합 계	3,645.3	3,718.4	3,793.4	3,868.5	3,946.5	18,973.2	3,79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는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요인에 대한 것으로 실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비용추계 규모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assembly.go.kr